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옥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348

발의연월일: 2024. 7. 29.

발 의 자: 송옥주 · 윤준병 · 임미애

임호선 • 한정애 • 위성곤

이병진 • 권칠승 • 정을호

박해철・박 정・이원택

이수진 • 이해민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

공익형직불제를 도입하고 쌀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서 정부는 쌀 생산이 과잉되거나 하락할 경우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식으로 쌀 가격 안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, 쌀값 하락 시 시장격리를 실시할수 있는 근거가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소극적 시장격리가 이루어지면서 쌀값 폭락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.

쌀이 전체 재배면적의 47%를 차지하고, 농업소득의 33%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 재배 농가 경제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쌀 농가의 경영안전망 구축이 필요함.

이에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, 양곡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심의 기구를 마련하고, 정부가 논타작물 재배지원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

는 등 쌀값 정상화 및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를 확립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공공비축양곡을 미곡·밀·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으로 정의함(안 제2조).
- 나.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 근거를 마련함(안 제9조 의3 신설).
- 다.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는 양곡수급안정대책에 양곡의 목표 가격을 포함하도록 함(안 제16조제1항제3호 신설).
- 라.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하도록 함(안 제16 조의3 신설).
- 마.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가격안정제도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미곡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상승이 우려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(안 제16조제4항 신설).
- 바.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함(안 제16조의4 신설).
- 사.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미곡 공급량의 선제적 조절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함(안 제16조의5 신설).

아. 논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논타작물 재배지원의 근거를 마련함(안 제16조의6 신설).

법률 제 호
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"미곡"을 "미곡・밀・콩"으로 한다.

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9조의3(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·운용) ①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의 매입·보관·가공·공급 등 수급을 종합 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 용할 수 있다.
 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(이하 "종합관리시스템"이라 한다)의 관리·운영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 - ③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・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 과 같이 한다.
 - 3. 양곡의 목표가격. 이 경우 목표가격은 양곡의 생산비, 물가상승률

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.

-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4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1. 미곡의 가격이 제16조의4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우려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: 농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 의 매입. 이 경우 매입가격은 공공비축미곡의 매입가격으로 한다.
- 2. 미곡의 가격이 제16조의4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상승이 우려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: 정부관리양곡의 판매

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3(양곡가격안정제도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,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양곡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[평년가격(직전 5년중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제외한 평균가격을 말한다)을 기준으로 하되 생산비용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6조의4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

한 가격을 말한다. 이하 같다]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(이하 "양곡가격안정제도"라 한다)를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 미곡의 경우 양곡가격안정제도의 대상 농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에 미곡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한정하여 실시한다.

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가격안정제도가 필요한 양곡의 대상 품목을 제16조의4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하고 이를 고시한다.
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정·고시된 양곡가격안정 제도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을 제16조의4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.
-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가격보장제도의 차액(기준가격과 시장 가격의 차이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지급비율을 제16조의4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.
- 제16조의4(양곡수급관리위원회) ①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 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 곡수급관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
 - 2. 제16조제2항에 따른 미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공표
 - 3.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양곡의 매입·판매 여부, 매입·판

매 물량, 매입 · 판매 시기 및 매입 · 판매 가격

- 4. 제16조의2에 따른 미곡 재배면적의 조정
- 5. 그 밖에 양곡의 수급안정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,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④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
- 1.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및 식량정책관
- 2.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
- 3.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
- 4.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장
- ⑤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
- 1.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생산자단체 대표
- 2.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유통인단체 및 소비자단체 대표
- 3. 학계 등에서 양곡 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
- 4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16조의5(미곡의 가격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조절)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당해연도 미곡의 예상 생산량을 추정하여 미곡 공급량을 선 제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 - 1.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당해연도에 생산된 미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하는 사업
 - 2. 제1호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는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판매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
- 3. 농업협동조합 등과 미곡 생산자간의 수급조절용 계약재배 사업 제16조의6(논타작물 재배 지원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와 연계하여 논에서 재배하는 벼 이외의 작물(이하 "논타작물"이라 한다)의 재배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논타작물 재배지원 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 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논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논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면적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등

- 에 대하여 논타작물의 재배나 휴경 등의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.
- ⑤ 제3항에 따른 지원 및 제4항에 따른 의무 부여의 요건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	
다.	–.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3. "공공비축양곡"이란 양곡부	3
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	
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	
위하여 정부가 민간으로부터	
시장가격에 매입하여 비축하	
는 <u>미곡</u> 과 대통령령으로 정하	<u>미곡·밀·콩</u>
는 양곡을 말한다.	
4. ~ 7. (생 략)	4. ~ 7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제9조의3(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
	시스템 구축·운용) ① 농림축
	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
	의 매입・보관・가공・공급 등
	수급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
	위하여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
	시스템을 구축·운용할 수 <u>있</u>
	<u>다.</u>
	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
	항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(이
	하 "종합관리시스템"이라 한다)

제16조(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)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양곡수급 안정대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1.·2. (생략) <신설>

- ② ~ ③ (생 략)
- ④ 제3항에 따라 미곡을 매입

의 관리 · 운영을 위하여 관	<u>- 계</u>
행정기관이나 관련 기관 또	는
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	-0]
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	수
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	나
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지	-는
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	따
라야 한다.	

- ③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 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.
- 제16조(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) ① -----

--.

- 1. · 2. (현행과 같음)
- 3. 양곡의 목표가격. 이 경우
 목표가격은 양곡의 생산비,
 물가상승률 및 그 밖에 대통
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
 하여 정한다.
- ② ~ ③ (현행과 같음)
-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

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 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기 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 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 상 또는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다.

하는 경우 그 물량은 해당 연 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 상 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6 조의4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- 1. 미곡의 가격이 제16조의4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 상으로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우려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: 농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해당 연도에 생산 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또는 예상생 산량의 매입. 이 경우 매입가 격은 공공비축미곡의 매입가 격으로 한다.
 - 2. 미곡의 가격이 제16조의4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 상으로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상승이 우려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: 정부관리양곡의 판매

⑤ ~ ⑦ (생 략) <u><신 설></u>

⑤ ~ ⑦ (현행과 같음) 제16조의3(양곡가격안정제도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 불안정에 따른 농가 경영 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을 안정 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,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양곡 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[평년 가격(직전 5년중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제외한 평균가격을 말한다)을 기준으로 하되 생산 비용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서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이 제16조의4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고시한 가격을 말한 다. 이하 같다] 미만으로 하락 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(이하 "양곡가격안정제도" 라 한다)를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 미곡의 경우 양곡가격안 정제도의 대상 농지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에 미 곡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한정

하여 실시한다.

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 가격안정제도가 필요한 양곡의 대상품목을 제16조의4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.
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 항에 따라 확정·고시된 양곡 가격안정제도 대상 품목의 기 준가격을 제16조의4에 따른 양 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.
-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 가격보장제도의 차액(기준가격 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지급비율을 제16 조의4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.

제16조의4(양곡수급관리위원회)
①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
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
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
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
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
둔다.

<신 설>

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한다.
- 1.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곡수 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
- 2. 제16조제2항에 따른 미곡수 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공표
- 3.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 른 양곡의 매입·판매 여부, 매입·판매 물량, 매입·판매 시기 및 매입·판매 가격
- 4. 제16조의2에 따른 미곡 재배

 면적의 조정
- 5. 그 밖에 양곡의 수급안정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,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④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
- 1.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및 식량

 정책관

- 2.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
- 3.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
- 4.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 측본부장
- ⑤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한다.
- 1.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생산자단체 대표
- 2.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유 통인단체 및 소비자단체 대표
- 3. 학계 등에서 양곡 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가진 사람
- 4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6조의5(미곡의 가격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조절)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은 당해연도 미곡의 예상 생산량을 추정하여 미곡 공급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기

<신 설>

<신 설>

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지원할 수 있다.

- 1.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당해연 도에 생산된 미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하는 사업
- 2. 제1호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 는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판매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
- 3. 농업협동조합 등과 미곡 생

 산자간의 수급조절용 계약재

 배 사업
- 제16조의6(논타작물 재배 지원)
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
 회의 심의를 거쳐 「농업・농
 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14
 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식량 및
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
 와 연계하여 논에서 재배하는
 벼 이외의 작물(이하 "논타작물"이라 한다)의 재배지원을
 위한 계획을 수립・시행하여야
 한다.
 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

 항에 따른 논타작물 재배지원

 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

- <u>그</u>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논타 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 하여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 원을 할 수 있다.
-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논타 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 모 이상의 면적에서 벼를 재배 하는 농업인 등에 대하여 논타 작물의 재배나 휴경 등의 의무 를 부여할 수 있다.
- ⑤ 제3항에 따른 지원 및 제4 항에 따른 의무 부여의 요건ㆍ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.